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特許拒絕 定

<大法院 第3部 判決>(1982. 9. 28)

裁判長: 大法院判事 김 덕 주

關與法官: 〃 윤 일 영, 정 태 균, 오 성 환

1. **審判請求人(上告人)**: 株式會社 東京タツレ(日本國 東京都 港區芝浦 2丁目 12番 13號)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特許廳長
3. **原審決**: 特許廳 1981. 10. 30字, 1980년 抗告審判絕 第602號 審決
4. **主 文**: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審判請求人 代理人의 上告理由를 判斷한다(上告理由補充書는 期間도과후에 提出되었으므로 上告理由를 補充하는 範圍內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原審決 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當初 出願된 明細書에 탄성장치를 구비한 유연성도관, 유연성도관이 收納되는 하우징장치, 고정도관을 通하여 저장조로부터 노즐로 기름을 분사케하는 펌프장치등을 本原發明의 要旨로 하고 있고 特許請求의 範圍에도 이와같은 技術의 要旨를 多項으로 記載하고 있으므로 本件 액체의 分配장치는 單一發明으로는 볼 수 없음이 明白한 바, 이에 따라 원사정은 多發明 一出願이라는 理由를 들어 이를 拒絕하였는데도 請求人은 이에 대한 하등의 必要한 措置를 取한 바 없다가 抗告審判 계류중인 1980. 12. 1 請求補正書 및 明細書補正書를 提出하면서 形式上으로는 單項으로 정정하였으나 補正書의 請求範圍를 精査하여도 記載形式에 있어서 번호만 삭제하였을뿐 그 內容에 있어서는 當初 出願明細書의 請求範圍와 같게 펌프장치, 탄성장치 및 액체의 분배장치등의 多項請求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건 출원의 發明은 1出願多發明의 請求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이 明白하므로 이를 多發明 1出願으로 보아 特許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原査定의 拒絕措置는 適法하다고 判示하고 있다.

記錄과 對照하여 살펴보아도 原審決의 위와 같은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審理未盡, 判斷遺脫, 法理誤解,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설사 본 出願과 같은 內容으로 된 特許出願이 美國에서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當時 우리나라와 다른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예에 불과하여 이건에 있어서 참작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나 논지는 모두 理由없다.

이에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패소자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參 考

抗告審判

1980年 抗告審判(절) 第602號

抗告審判請求人: (株) 東京タツレ

被抗告審判請求人: 特許廳長

1976年 特許出願 第2192號 拒絕査定不服 抗告審判請求事件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

主文: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